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중간 위험]**

KTB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KTB 글로벌공모주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TB 글로벌공모주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KTB 글로벌공모주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 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 일 : 2012년 1월 1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년 1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작)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 |
|-------------|---------------------------------|-------|-------|-------|-------|
| 명 칭 | KTB글로벌공모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9934) | | | | |
| 종류(클래스) | 종류 A | 종류 C | 종류 Ce | 종류 CF | 종류 CW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19935 | 19936 | 19937 | 19939 | 19940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판매가능)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 |
|-------------|---------------------------------|-------|-------|-------|-------|
| 명 칭 | KTB글로벌공모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9934) | | | | |
| 종류(클래스) | 종류 A | 종류 C | 종류 Ce | 종류 CF | 종류 CW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19935 | 19936 | 19937 | 19939 | 19940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10.03.26 | 최초설정 |
| 2010.06.14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추상범 -> 전우석) |
| 2012.01.18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전우석 -> 추상범)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한국금융투자협회빌딩 (대표전화 : 02-788-8400)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2.01.18 현재)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 현황 | | 주요 운용 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 김정희 | 49세 | 채권 CIO | 89개 | 23,233억 | - '01.12~'05.01 대신투신운용 채권운용팀 - '05.01~현재 KTB 자산운용 채권운용 |
| 추상범 | 35세 | 과장 | 20개 | 533억 | - '08.02~'10.06 KTB 자산운용 해외투자팀 - '10.06~'11.11 KTB Asset Management Asia - '11.11~현재 KTB 자산운용 해외투자팀 |

주)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 관련 자산은 해외투자본부가, 주식 외의 자산은 채권운용본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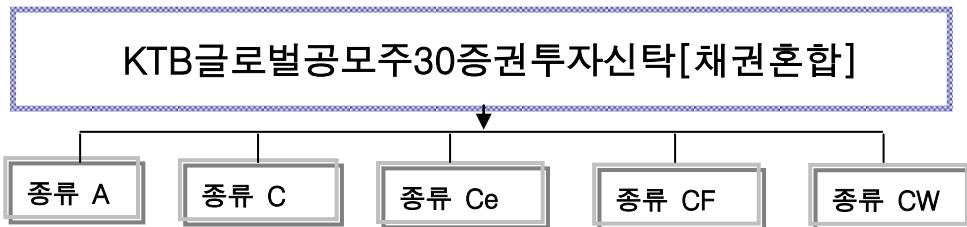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책임운용전문인력 | 구분 | 운용 기간 |
|----------|--------|-----------------------------|
| 추상범 | 해외투자본부 | 2010년 3월 26일 ~ 2010년 6월 13일 |

| | | |
|-----|--------|-----------------------------|
| 전우석 | 해외투자본부 | 2010년 6월 14일 ~ 2012년 1월 17일 |
| 추상범 | 해외투자본부 | 2012년 1월 18일 ~ 현재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 종류별 | 가입자격 |
|-------|--|
| 종류 A | 가입제한 없음 |
| 종류 C | 가입제한 없음 |
| 종류 Ce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종류 CF | 가.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 종류 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

<보수 및 수수료 차이>

| 구 分 |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종 류 | | 종류 A | 종류 C | 종류 Ce | 종류 CF | 종류 CW | |
| 수수료 | 판매수수료(선취) | 납입금액의 1% 이내 | 해당 사항 없음 | | | | |
| | 환매수수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 | | | | |
| 보수 | 집합투자업자보수 | 0.48 | | | | | |
| | 판매회사보수 | 0.55 | 0.95 | 0.72 | 0.03 | 0.0 | |
| | 기타보수 | 0.07 | | | | | |
| | 보수합계 | 1.10 | 1.50 | 1.27 | 0.58 | 0.55 | |

주)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그 밖에 공모주 등 주식에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 투자대상 종류 | 투자한도 | 투자대상 조건 |
|-----------------------------|---|--|
| ① 주식 및 외국주식 | 30% 이하 (공모주 등에의 투자는 주식 및 외국주식투자비중의 50% 이상) | 지분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하는 것과 주권상장법인 및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제3자 배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및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G20의 참여국가에 한한다) * 공모주 등 :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및 이들 법인이 제3자 배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등 |
| ② 채권 | 90% 이하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
| ③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④ 어음등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
| ⑤ 금리스왑거래 | 100% 이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 기준 |
| ⑥ 수익증권등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 5% 이하 (3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 ⑦ 환매조건부매도 |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

| | | | |
|---|-------|-----------------|--|
| ⑧ | 파생상품 | 위험평가액 10% 이하 | 통화 또는 통화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해외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방지 목적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 |
| ⑨ | 증권 대여 | 50% 이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
| ⑩ | 증권 차입 | 20% 이하 | 주식, 채권, 어음등,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차입허용 |
|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 주식과 외국주식,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합니다. 다만, 파생상품에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 | |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화 또는 외화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 | |
| <p>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p> <p>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p> | | | |
| <p>① 내지 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p> <p>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 | | |

주) 자세한 투자대상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대상 종류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 예외 |
|-----------|---|---------------|
| ① 단기대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위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
| ② 동일종목 투자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 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 | | <p>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 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 |
| ③ | 동일법인 발행지분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④ | |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⑤ | 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⑥ | 투자 |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
| ⑦ |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 |
| ⑧ |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 |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 지 투자할 수 있다.</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p> <p>(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 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0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⑨ | 계열회사 지분증권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⑩ | 후순위채권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 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투자한도 초과 |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투자대상’ ⑤ 내지 ⑩, ‘나. | |

| |
|---|
| <p>‘투자제한’ ② 및 ③, ⑤ 내지 ⑦, ⑧의 (가), (나) 및 (라)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은 ‘나. 투자제한’ ②, ⑤ 내지 ⑦, ⑧의 (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
|---|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국내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면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G20 참여국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연합)의 주식에 투자 하되 주식투자비중의 50% 이상을 공모주 등(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및 이들 법인이 제 3 자 배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등)에 투자하여 향후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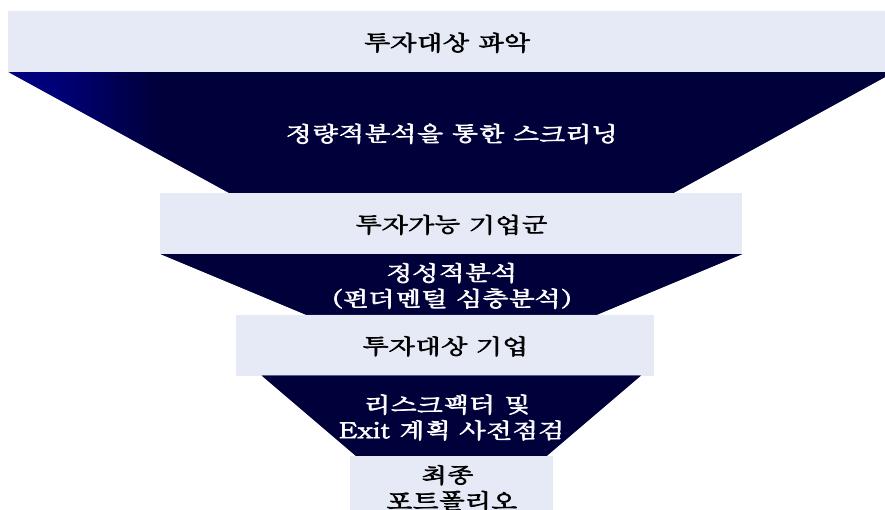
국내 공모주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대형사 위주로 투자할 예정이며, 해외 공모주는 글로벌 IB 및 국내증권사의 해외현지 법인 등을 통한 딜소싱 및 리서치를 활용하여 투자 대상을 선정 합니다.

※ G20 참여국가 구성은 현재(2010년 3월 25일)시점 기준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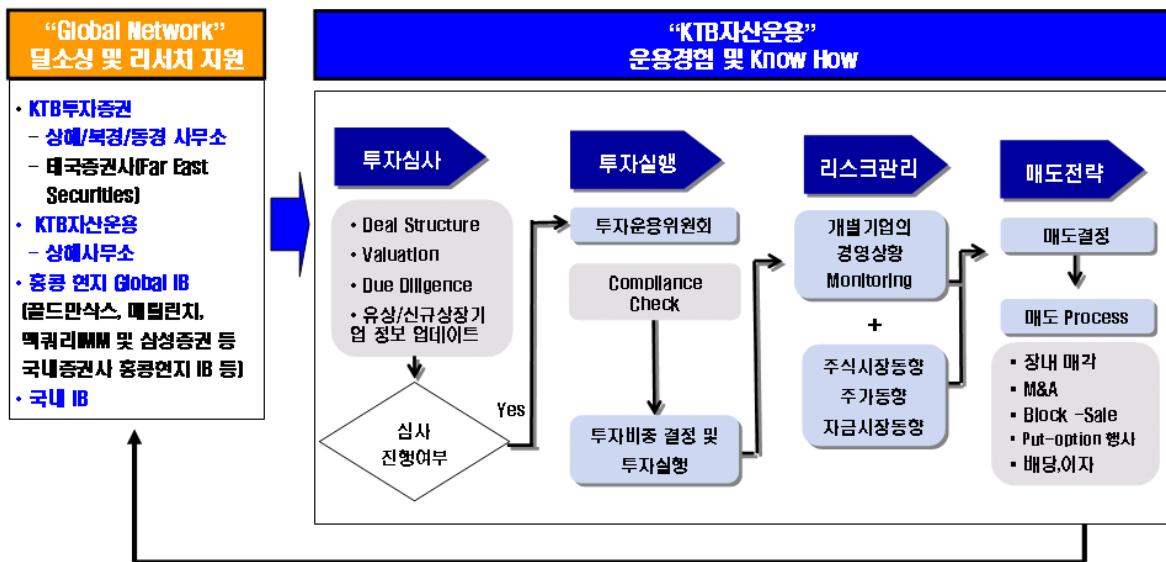
투자대상종목에 대하여 Top-down/Bottom-up,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한 투자기업에 대한 Valuation 실행하고 개별 투자 대상별 Valuation 평가에 따라 투자비중, 적정가격,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합니다.

정량적 분석은 적절한 투자성격을 지닌 투자기업군을 제공합니다. Momentum Approach(업종과 기업의 성장 동력 및 주가 견인 동력 분석), Stock Picking Model(주요 재무지표들에 기반한 종목 선정 기준 적용) 및 Techincal Approach(시가총액, 유동성 및 공모가격 적정성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예측)의 방법을 통해 투자가능 기업군을 구성합니다.



(3) 투자대상 선정 및 세부 운용 프로세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대상에 대한 딜소싱, 리서치와 세부운용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실행합니다.



(4)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한 매도전략 실행

- ① 투자운용위원회의 투자심의를 통한 공동의사결정으로 매니저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리스크 최소화
- ② Global Network(글로벌 IB 및 국내증권사의 해외현지 법인 등)의 투자대상 1 차 Filtering 후 KTB 자산운용(주) 투자운용위원회와 담당매니저의 심층 분석을 통한 엄격한 투자심사
- ③ 개별 투자 건에 대한 유동성 및 투자조건 검토를 통해 투자 참여부터 Exit 단계까지 전 투자과정에 대한 리스크 팩터 사전 점검 및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 수익 극대화 추구

(5) 채권 투자전략 : 신용과 유동성이 높은 종목 중심의 채권편입으로 안정적 이자수익 추구

- ① 드레이션 1.2 내외에서 중립적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 ② 시장타이밍에 주로 의존하는 단기적 투자 지양하되 상대가치매매 등으로 추가 수익 획득

(6)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공모주 등 다른 일반주식의 성과와 차별화 된 성과를 나타내는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용실적에 적합한 비교지수 수익률이 없으므로 투자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환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은 G20 참여 국가시장을 비롯한 기타국가들과 한국 원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위험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달러에 대해서 80 ± 20%의 비중을 목표로 환위험 제거를 실행할 예정이지만, 다른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해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 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해지와 관련하여 환해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국내 채권 및 G20 참여 국가의 공모주 등을 포함한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 및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주식 및 외국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국내주권 및 외국주권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국내주식 및 외국주식 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헷지를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 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헷지비율 조절을 통한 환차익을 추구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금리 변동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신용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 |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해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의 범위는 무한대로 이 투자신탁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증권시장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공모주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주식시장의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모주 발행물량이 다르고 시장의 급변으로 공모주발행이 원활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공모주가 원활히 발행되는 특정국가에 집중투자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시장의 증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중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을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환매연기위험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환매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 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에 자산총액의 90% 이하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G20 참여국가 중심으로 공모주 등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하므로, 시장변동에 따라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중간인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펀드보다 환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KTB자산운용회사의 투자위험등급 기준>

| | |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해지목적거래인 경우와 투기목적거래가 자산총액의 1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상인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실질적으로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
| 2등급 |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에 30%~60%를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투자부적격회사가 발행하는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미만인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상가, 물류센터 등 사용 목적이 특정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담보나 지급보증이 불충분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

| | | |
|-----|-------------|---|
| 3등급 | 중간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투자적격채권 중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지목적거래인 경우, 차익거래인 경우 및 투기목적거래가 자산총액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10% 미만인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오피스 등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투자회수가 용이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
| 4등급 |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적격채권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원금보존 ELS 포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원금보전형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과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
| 5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유동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 등) - 국공채에 투자하는 경우 |

주) 위의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KTB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판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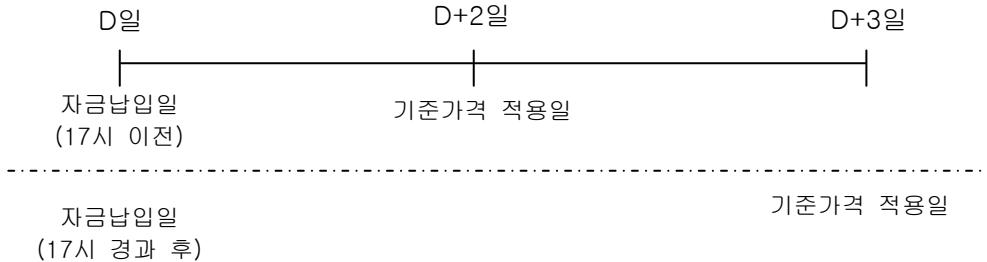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 종류별 | 펀드코드 | 가입자격 |
|-------|-------|--|
| 종류 A | 19935 | 가입제한 없음 |
| 종류 C | 19936 | 가입제한 없음 |
| 종류 Ce | 19937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종류 CF | 19939 | 가.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 종류 CW | 19940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D+ 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나)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D+ 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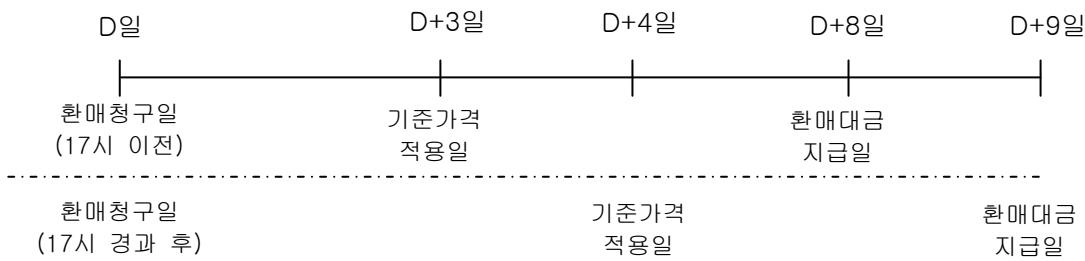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D+ 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 8)에 환매대금 지급
-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D+ 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 9)에 환매대금 지급



-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라)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잦은 자금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환매청구에 따라 보유 증권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잔류 수익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일정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으로 편입됩니다.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 | | 지급시기 |
|----------------------------------|------------|------|-------------------|-------|-------|------|
| | 종류 A | 종류 C | 종류 Ce | 종류 CF | 종류 CW |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정수) | |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 | 환매시 |

주)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7시[오후 5시]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합니다. |
|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종류 수익증권 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 공시방법 및 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주)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begin{aligned}
 \text{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총액}}{\text{총좌수}} \\
 \text{수익증권 매입 및} \\
 \text{환매시 거래기준이} \\
 \text{되는 가격} &\quad \boxed{1좌 = 1원} \\
 &\quad \boxed{1,000좌 기준 = 1,000원} \\
 \text{실제} \\
 \text{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총액}}{\text{총좌수}} \times 1,000
 \end{aligned}$$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
|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
| 비상장채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수수료율 | | | | | 지급시기 |
|---------|-------------|------|-------------------|-------|-------|------|
| | 종류 A | 종류 C | 종류 Ce | 종류 CF | 종류 CW | |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 이내 | | 해당사항 없음 | | | 매입시 |
| 후취판매수수료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환매수수료 | |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 | 환매시 |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2.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 분 | 지급비율 (연간, %) | | | | | 지급시기 |
|----------|--------------|------|-------|-------|-------|--------------|
| | 종류 A | 종류 C | 종류 Ce | 종류 CF | 종류 CW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48 | | | | | |
| 판매회사보수 | 0.55 | 0.95 | 0.72 | 0.03 | 0 | 매 3 개월 후급 |
| 신탁업자보수 | 0.05 | | | | | |
| 일반사무관리보수 | 0.02 | | | | | |
| 기타 비용 | 0.55 | 0.55 | 0.55 | 0.55 | 0.55 | 사유발생시 |
| 총보수 및 비용 | 1.65 | 2.05 | 1.82 | 1.13 | 1.10 | - |
| 증권 거래비용 | 0.44 | 0.44 | 0.44 | 0.44 | 0.44 | 사유발생시 |

-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종류CF, CW는 미설정된 펀드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종류C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10 년 |
|-------|---------|---------|-----------|-----------|
| 종류 A | 266,086 | 614,995 | 987,473 | 2,031,341 |
| 종류 C | 208,023 | 642,467 | 1,102,653 | 2,374,713 |
| 종류 Ce | 184,893 | 527,342 | 984,592 | 2,133,189 |
| 종류 CF | 115,188 | 359,032 | 622,003 | 1,372,295 |
| 종류 CW | 112,146 | 349,657 | 605,948 | 1,337,937 |

-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총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총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A 와 종류 C 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 년 1 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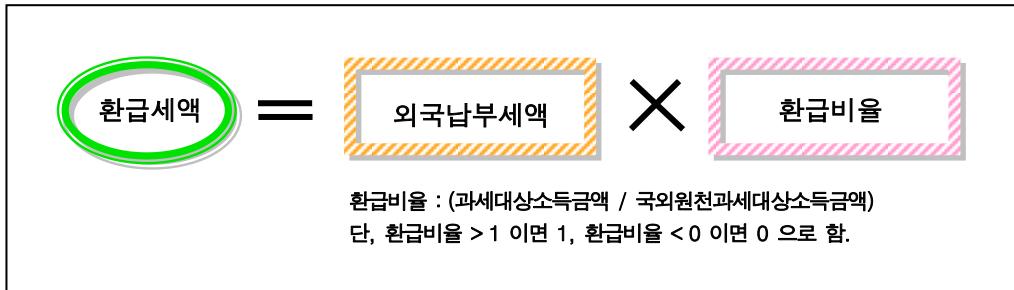
-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으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안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1기의 각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대차대조표 | | | |
|----------|---------------------|--|--|
| 항 목 | 제1기 (2011.03.25) | | |
| 운용자산 | 26,585 | | |
| 증권 | 17,252 | | |
| 파생상품 | - | | |
| 부동산/실물자산 | - | | |
| 현금및예치금 | 5,152 | | |
| 기타운용자산 | 4,181 | | |
| 기타자산 | 2,817 | | |
| 자산총계 | 29,403 | | |
| 운용부채 | - | | |
| 기타부채 | 3,195 | | |
| 부채총계 | 3,195 | | |
| 원본 | 26,208 | | |
| 이익잉여금 | - | | |
| 자본총계 | 26,208 | | |

손익계산서

| 항 목 | 제1기 (2010.03.26~2011.03.25) | | |
|------------|--------------------------------|--|--|
| 운용수익 | 1,320 | | |
| 이자수익 | 1,227 | | |
| 배당수익 | 52 | | |
| 매매/평가이익(손) | 38 | | |
| 기타수익 | 4 | | |
| 운용비용 | 547 | | |
| 관련회사보수 | 523 | | |
| 매매수수료 | 2 | | |
| 기타비용 | 23 | | |
| 당기순이익 | 773 | | |
| 매매회전율 | 329.97 | | |

나.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 항 목 | 제1기 (2011.03.25) | | |
|------------|---------------------|--|--|
| 운용자산 | 26,585 | | |
| 현금및예치금 | 5,152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128 | | |
| 기타예금 | 1,025 | | |
| 증거금 | - | | |
| 대출채권 | 4,181 | | |
| 콜론 | 3,184 | | |
| 매입어음 | 997 | | |
| 증권 | 17,252 | | |
| 지분증권 | 6,057 | | |
| 채무증권 | 11,196 | | |
| 기타자산 | 2,817 | | |
| 매도증권미수금 | 2,727 | | |
| 정산미수금 | 42 | | |
| 미수이자 | 27 | | |
| 미수배당금 | 2 | | |
| 선급비용 | 19 | | |
| 기타미수금 | 0 | | |
| 자산 총계 | 29,403 | | |
| 기타부채 | 3,195 | | |
| 매수증권미지급금 | 2,527 | | |
| 정산미지급금 | - | | |
| 해지미지급금 | 309 | | |
| 미지급운용수수료 | 37 | | |
| 미지급판매수수료 | 56 | | |
| 미지급수탁수수료 | 4 | | |
| 미지급사무관리수수료 | 2 | | |
| 수수료미지급금 | 2 | | |
| 기타미지급금 | 259 | | |
| 부채 총계 | 3,195 | | |
| 원 본 | 26,208 | | |
| 이익잉여금 | - | | |
| 자본 총계 | 26,208 | | |
| 부채및자본 총계 | 29,403 | | |
| 총좌수 | 26,208 | | |
| 기준가격(원) | 1,000 | | |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항 목 | 제1기 2010.03.26 ~ 2011.03.25) | | |
|----------------------|------------------------------------|--|--|
| 운용수익(또는 운용손실) | 1,320 | | |
| 투자수익 | 1,282 | | |
| 이자수익 | 1,227 | | |
| 배당금수익 | 52 | | |
| 수수료수익 | 3 | | |
|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6,020 | | |
| 지분증권매매차익 | 2,357 | | |
| 채무증권매매차익 | 44 | | |
| 파생상품매매차익 | 2,978 | | |
| 외환거래매매차익 | 411 | | |
| 지분증권평가차익 | 230 | | |
| 채무증권평가차익 | 0 | | |
|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5,981 | | |
| 지분증권매매차손 | 163 | | |
| 채무증권매매차손 | 395 | | |
| 파생상품매매차손 | 2,542 | | |
| 외환거래매매차손 | 816 | | |
| 지분증권평가차손 | 2,058 | | |
| 채무증권평가차손 | 7 | | |
| 기타운용수익 | 0 | | |
| 운용비용 | 547 | | |
| 운용수수료 | 199 | | |
| 판매수수료 | 294 | | |
| 수탁수수료 | 21 | | |
| 사무관리수수료 | 8 | | |
| 매매수수료 | 2 | | |
| 기타운용비용 | 23 |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773 | | |
| 천좌당순이익(또는 천좌당순손실) | 18.91 |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화, 억원)

| 구분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 | | 환매 |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종류 A | 2010/03/26 ~2011/03/25 | 98 | 98 | 314 | 316 | 278 | 284 | 134 | 135 |
| 종류 C | 2010/03/26 ~2011/03/25 | 34 | 34 | 195 | 196 | 109 | 111 | 120 | 120 |
| 종류 Ce | 2010/03/26 ~2011/03/25 | 2 | 2 | 36 | 36 | 30 | 31 | 9 | 9 |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당해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기 간 | 최근 1년 (10.03.26~ 11.03.25)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4년 | 최근 5년 |
|-------|----------------------------------|-------|-------|-------|-------|
| 종류 A | 1.17% | | | | - |
| 종류 C | 0.77% | | | | - |
| 종류 Ce | 1.00% | | | | - |

주)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기 간 | 최근 1년차 (10.03.26~ 11.03.25)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종류 A | 1.17% | | | - | - |
| 종류 C | 0.77% | | | - | - |
| 종류 Ce | 1.00%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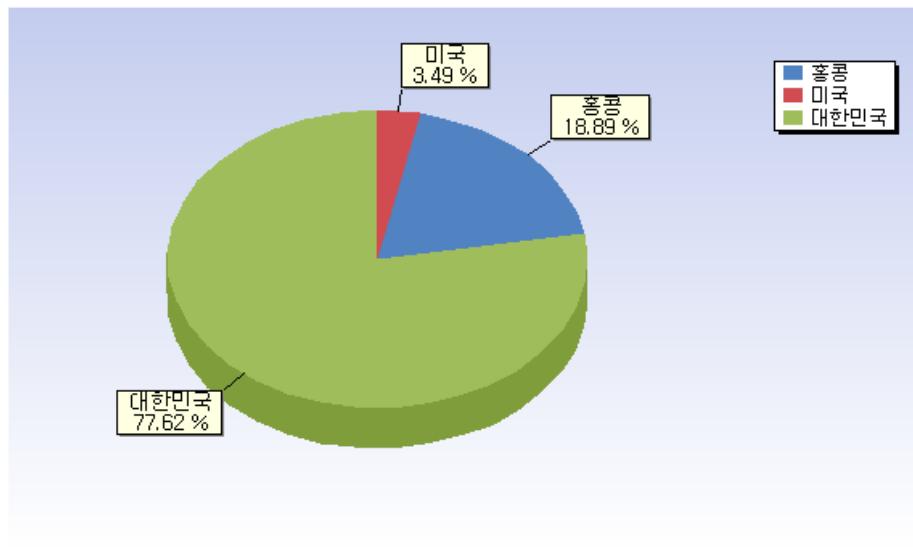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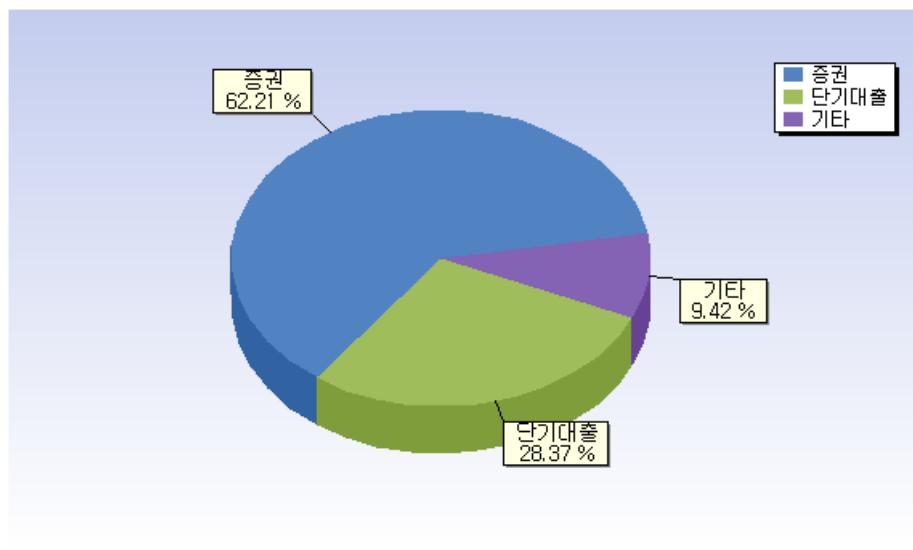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2011.03.25. 기준)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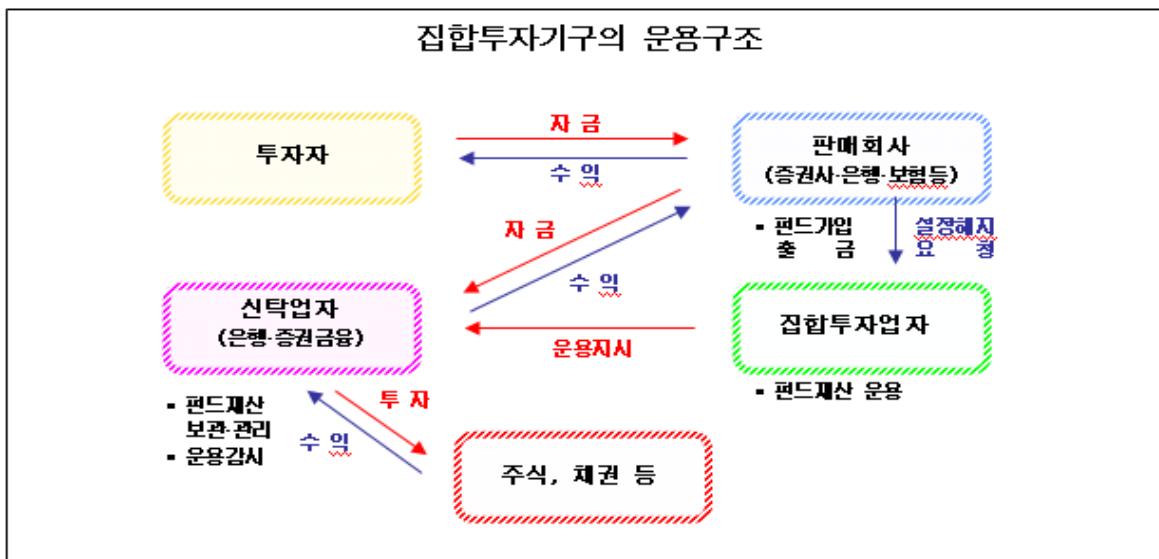
| 통화 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 동 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여음 | 집합 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HKD | 49 | - | - | - | - | - | - | - | - | 7 | - | 56 |
| 비중 | (16.65) | - | - | - | - | - | - | - | - | (2.24) | - | (18.89) |
| USD | 7 | - | - | - | - | - | - | - | - | 4 | - | 10 |
| 비중 | (2.24) | - | - | - | - | - | - | - | - | (1.25) | - | (3.48) |

| | | | | | | | | | | | | |
|-----|---------|---------|--------|---|---|---|---|---|---|---------|--------|---------|
| KRW | 5 | 112 | 10 | - | - | - | - | - | - | 73 | 28 | 228 |
| 비중 | (1.17) | (38.21) | (3.40) | - | - | - | - | - | - | (24.88) | (9.42) | (77.62) |
| 합계 | 61 | 112 | 10 | - | - | - | - | - | - | 83 | 28 | 294 |
| 비중 | (20.60) | (38.21) | (3.40) | | | | | | | (28.37) | (9.42) | (100) |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연락처 : 02-788-8400, www.i-ktb.com) |
| 회사 연혁 |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 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 억 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
| 자본금 | 166.2 억 원 |
| 주요주주현황 | KTB 투자증권(주)(90.12%) |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 요약 대차대조표 |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계정과목 | '10.04.01 ~'11.3.31 | '09.04.01 ~'10.3.31 | 계정과목 | '10.04.01 ~'11.3.31 | '09.04.01 ~'10.3.31 |
| 유동자산 | 40,534 | 31,850 | 영업수익 | 41,672 | 36,294 |
| 고정자산 | 9,215 | 8,386 | 영업비용 | 23,256 | 20,236 |
| 자산총계 | 49,749 | 40,236 | 영업이익 | 18,416 | 16,058 |
| 유동부채 | 5,091 | 3,549 | 영업외수익 | 145 | 288 |
| 고정부채 | 2,555 | 1,836 | 영업외비용 | 1,626 | 694 |
| 부채총계 | 7,646 | 5,385 | 경상이익 | 16,935 | 15,652 |
| 자본금 | 16,620 | 16,620 | 특별이익 | - | - |
| 잉여금 | 25,407 | 17,702 | 특별손실 | - | - |
| 자본조정 | 76 | 529 | 세전순이익 | 16,935 | 15,652 |
| 자본총계 | 42,103 | 34,851 | 당기순이익 | 12,690 | 11,765 |

라. 운용자산 규모

(2011. 4. 30 현재, 단위: 억원)

| 집합투자 기구종류 | 증권 | | | | | 부동산 | 특별자산 | MMF | 기타 | 총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파생상품 | 재간접 | | | | | |
| 수탁고 | 38,529 | 15,627 | 26,341 | 6,212 | 477 | 6,485 | 4,745 | 3,667 | 4,507 | 106,590 |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신한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08-1 (☎1599-8000) |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hinhan.com |
| 회사연혁등 | 홈페이지 참조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 ②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 ③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외환펀드서비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번지 한외빌딩 9층 (☎02-6714-4615) |
| 회사연혁 등 |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 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한국채권평가 | 나이스채권평가 | KIS채권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번지 ☎ 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번지 ☎ 02-3215-1400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m | www.nicepricing.co.kr | www.bond.co.kr |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 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는 관련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KTB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i-ktb.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폐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의 (2)자산운용보고서의 (다)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i-ktb.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 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 분 | 증개회사 선정기준 | |
|------|-----------|--|
| 증권거래 | 주식 |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마케팅 항목(펀드판매기여부문), 투자참고 항목(Sector별 Analyst Call, 리서치페이퍼, 기업탐방주선, 세미나, 스팟정보), 브로커능력 항목(매매체결능력, 수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 항목(사이버를 포함한 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 항목(요청자료의 응대 등)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 운용지원 부서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
| | 채권 등 |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
| 장내파생 | 주식관련 |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증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프로그램 보유여부,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 운영지원부서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

| | | |
|--|------|--|
| | 채권관련 |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증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투자참고 항목(리서치, 시황, 세미나),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 운영지원부서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산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투자회사 |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 |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집합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 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
| 신주인수권부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어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KTB 글로벌공모주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게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취선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KTB 글로벌공모주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객 확인 사항 | 고객기재사항 |
|---|------------|
|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 (받았음) |
|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적합함) |
|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 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 (제공받고 들었음) |
|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 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